

2013. 5. 02

2012가단254696

판 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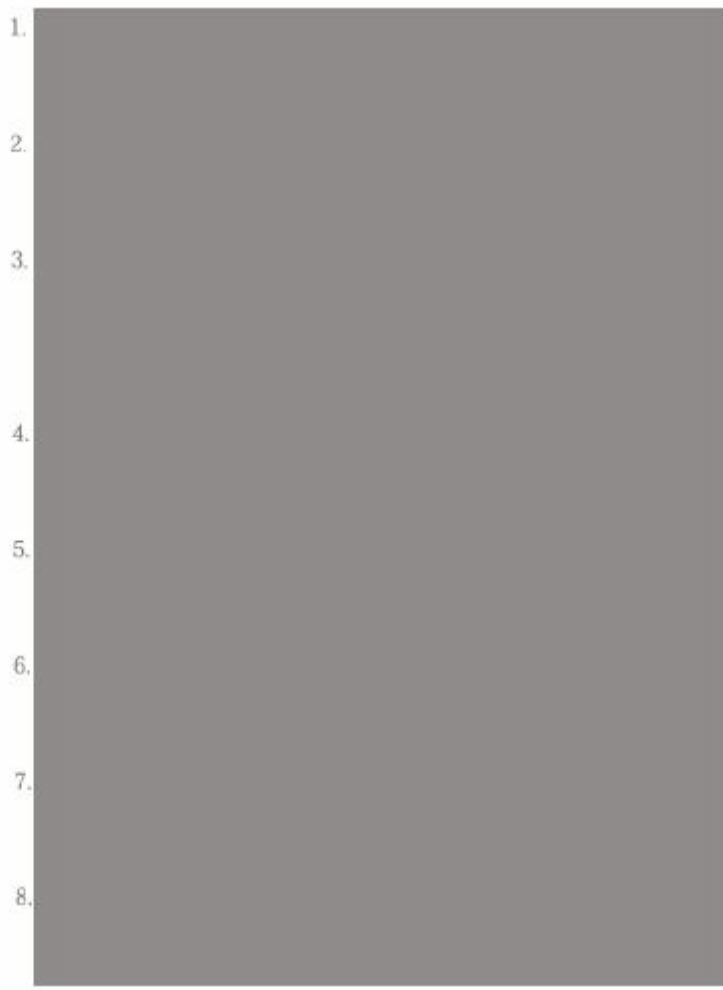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25469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9. [Redacted]

10. [Redacted]

11. [Redacted]

12. [Redacte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문종욱, 김성건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용호, 임수식, 진종한, 한혜진

변호사 홍영균, 조정환

피 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표자 관리인 박성근
 법률상대리인 김종국, 예민해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4.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기태에게 2,365,070원, 원고 김병훈에게 505,453원, 원고 이명희에게 3,156,000원, 원고 이웅정에게 5,535,000원, 원고 이정성에게 1,434,528원, 원고 이항미에게 323,050원, 원고 임지은에게 6,385,200원, 원고 장현민에게 1,369,000원, 원고 최윤미에게 3,993,912원, 원고 한상열에게 294,200원, 원고 허광에게 1,791,000원, 원고 황영환에게 2,058,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대출일	대출금액
원고 김기태	2007. 8. 6.	146,000,000원
	2007. 11. 7.	150,000,000원
원고 김병훈	2008. 7. 10.	57,000,000원
원고 이명희	2006. 1. 19.	395,000,000원
원고 이웅정	2006. 1. 26.	700,000,000원
원고 이정성	2008. 7. 16.	189,000,000원
원고 이항미	2009. 7. 1.	30,000,000원



	2010. 8. 26.	13,000,000원
원고 임지은	2009. 10. 19.	809,000,000원
원고 장현민	2006. 11. 27.	115,000,000원
	2007. 8. 10.	25,000,000원
원고 최문미	2009. 8. 17.	480,000,000원
원고 한상열	2004. 9. 1.	30,000,000원
원고 허광	2006. 5. 12.	220,000,000원
원고 황명환	2008. 2. 13.	300,000,000원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가 미리 준비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표준약관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이하 '이 사건 부담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제3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II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제5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I (기업용)>			
제6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여신거래약정서 II (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은행, <input type="checkbox"/>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②채권자는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 내에 "√"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담주체		
구분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동행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역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채권매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무사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말소(저당권 해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수수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부담조항의 '인지세의 부담' 및 '계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부분의 '본인' 또는 '채무자' 란에 '√' 표시를 한 다음 원고들이 인지세 및 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사용된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서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 등에 드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수수료, 말소(저당권 해지), 감정평가수수료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부담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아가 무효인 이 사건 부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이하 '근저당권설정비용'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부담조항에 근거하여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인지세 50%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합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이 사건 부담조항은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대상인 약관이 아니라 개별 약정이다. 또한, 이 사건 부담조항을 약관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불공정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담조항을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부담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채무자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5년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3. 판 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바,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 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담조항은 피고에 의하여 약정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원고들에게 제공된 것이고 대출계약 당사자의 인지세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일용 약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담조항은 그 자체로써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비용의 부담주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교섭을 통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





도록 예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형식은 계약교섭의 결과로서 예견 가능한 경우를 미리 정리해 놓고 선택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교섭 후에 그 결과를 직접 수기(手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간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을 금융거래양식으로 하여 고객인 원고들이 스스로 비용부담자를 자신으로 표시하거나 약정하여 성립된 합의는 금융기관인 피고와 고객인 원고들 사이의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담조항은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현실상 대부분의 고객이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금융기관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고객의 선택권 행사를 제약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 약정인 이 사건 부담조항 및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담조항 및 이를 활용한 원고들의 선택이 통틀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임을 전제로 그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양 상 윤





정본입니다.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장지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